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요양병원과 요양원(요양시설) 차이: 대상·비용...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요양병원과 요양원(요양시설) 차이: 대상·비용·건강보험 vs 장기요양보험

루리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으로,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생활 돌봄 시설이라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비용을 계산해요. 이용 조건과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서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정해야 해요.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으로,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생활 돌봄 시설이라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로 비용을 계산해요. 이용 조건과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서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정해야 해요.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 안내(최종수정 2025.03.2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

1 1. 한눈에 비교

구분	요양병원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성격	의료기관(치료, 입원)	노인의료복지시설(생활 돌봄)
비용 기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필요한 것	의사의 입원 필요 판단	장기요양인정서(등급)
본인부담	입원 20%가 기본이라고 안내됨(법령 공식 확인)	급여비용의 20%
별도 부담	식대 등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아·미용비

2 2. 요양원 이용 대상과 절차

-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가 이용해요.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선택하고, 3~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한 경우에 한해요.
- 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기관과 급여제공계약 → 이용이에요.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시·군·구를 통한 입소 절차가 따로 안내돼요.

3 3. 요양병원 이용 방식

-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으로 입원할 수 있어요.
- 입원비는 요양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는 방식이고 식대는 별도 비율이 적용돼요. 정확한 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를 공식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별도로 운영한 적이 있어요. 현재 참여 여부와 부담률은 공식 확인하세요.

4 4. 비용을 비교할 때 보는 순서

- 요양원: 1일 시설급여비용(등급·시설 유형별로 고시)에 본인부담률 20%를 곱해요. 2026년 금액은 고시에서 공식 확인하세요.
- 여기에 전액 본인부담인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아·미용비를 더해요.
-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에 식대와 비급여 항목을 더해요.

- 감경 대상(의료급여, 소득·재산 기준)인지 확인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제2호~제9호 수급권자는 60% 감경, 고시 기준 이하 소득·재산인 사람은 40% 또는 60% 감경돼요.

5 5. 자주 하는 실수

- 요양병원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 요양원 비용이 20%만 든다고 보고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를 빼먹는 경우예요.
- 3~5등급이 별 절차 없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 가족요양비를 받는 중에는 다른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예요.

6 6. 가상 예시

J씨 어머니가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면 요양병원이 맞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의료 처치보다 식사·목욕·이동 도움이 주로 필요하고 1등급이면 요양원 시설급여를 먼저 알아보는 식이에요. 실제 선택은 의사와 공단 상담이 필요해요.

7 체크리스트

- 필요한 도움이 치료인지 생활 돌봄인지 정리했다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확인했다
- 비급여(식사재료비 등) 금액을 시설에 확인했다
- 본인부담 감경 대상인지 확인했다
- 2026년 급여비용·요양병원 본인부담률을 공식 확인했다

8 용어 정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예요.
-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이에요.
- **비급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내는 항목이에요.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적힌 서류예요.

9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의료복지시설(입소 대상·절차):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40100>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40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급여비용(본인부담, 비급여):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5.html>)
-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898&act=view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0898&act=view)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누리집: <https://www.longtermcare.or.kr> (<https://www.longtermcare.or.kr>)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0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